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

아래 표지 중 **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**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



**주차가능**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

사용불가(X)



사용가능(O)



### Q&A

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?

안 됩니다.  
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(5분)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는 주차할 수 없나요?

안 됩니다.  
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와 표지 회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!



·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!



· 위조/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!  
·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!



### Q&A

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?

아파트 뿐만 아니라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'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

###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

-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[ 과태료 50만원 ]

### Q&A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(이중)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?

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,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(이중)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